

대화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510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5. 11. .

제안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대화목욕탕 시설관리의 효율성 확보와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관리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7조(의회의 동의)에 따라 평창군의회를 동의 받는다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: 대화목욕탕 관리운영 위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의5(수익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(적용 범위)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1조(대행사업의 비용 부담)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6조(설립·운영)
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7조(의회의 동의)
- 「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9조(사업)
- 「평창군 읍·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3조(위탁운영)

다.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

- 위탁시설: 대화목욕탕
- 위탁자: 평창군
- 수탁자: 평창군 시설관리공단
- 위탁내용: 대화목욕탕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반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: 대화면 남산1길 15(대화리 984)
- 시설규모: 대화목욕탕 528.26m²
- 시설내용: 지상1층 일반목욕장(남탕, 여탕, 휴게실) / 지하1층 기계실
-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: 2026. 7. ~ 2031. 6. (5년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: 수의계약(평창군 시설관리공단)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의5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제1항 제1호에 의거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- 대화목욕탕 위탁운영은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(적용 범위) 제1항 제9호에 따라 “공용·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”에 해당되므로 지방공단 위탁 가능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구 분		소요예산	비 고
인 건 비 (4인 기준)	기 본 급	100,992,000	
	제 수 당	17,660,784	직급보조, 휴가비, 정근수당 포함
	급 식 보 조 비	1,920,000	
	퇴 직 급 여 충 당 금	10,047,744	
	소 계 (A)	130,620,528	
경 비	소 모 품 비	14,190,482	
	지 급 임 차 료	1,286,690	
	보 험 료	2,217,813	
	통 신 비	681,802	
	수 리 수 선 비	34,967,384	
	집 기 비 품 비	13,782,400	
	전 력 비	44,389,086	
	수 도 광 열 비	91,163,118	
	지 급 수 수 료	6,039,648	
	교 육 훈 련 비	-	
	기 타 복 리 후 생 비	1,613,280	
	사 회 보 험 료	12,677,115	
	소 계 (B)	223,008,818	
순 운영원가 (C = A + B)		353,629,346	
일반관리비 (D = C x 6 %)		21,217,761	
운영원가 (E=C+D)		374,800,000	만원이하 절사

※ 시설관리인력 4명(남2, 여2) / 2명씩 교대 근무

아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-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 - 대화목욕탕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
- 경제적 효율성
 - 원가계산 용역 결과 공단 위탁이 타 기관 위탁 대비 예산절감 효과 기대
-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
 - 공단의 전문적인 시설관리로 시설물 수명 연장 및 안정성 확보

관계법령 발취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

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제19조의5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
1.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

□ 「지방공기업법」

제2조(적용 범위)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(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·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(이하 “지방직영기업”이라 한다)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.

9. 주택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)·토지 또는 공용·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

제71조(대행사업의 비용 부담)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
제76조(설립·운영) ② 공단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, 제53조제1항, 제56조제1항 및 제3항, 제57조, 제58조, 제58조의2,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,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, 제64조, 제64조의2, 제64조의4부터 제64조의6까지, 제65조, 제65조의2, 제66조, 제66조의2, 제68조, 제69조, 제71조,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, 제72조 및 제73조,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공사”는 “공단”으로, “사장”은 “이사장”으로, “사채”는 “공단채”로 본다.

□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

제7조(의회의 동의)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□ 「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19조(사업) ①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
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 평창군의회 동의를 얻은 사업

□ 「평창군 읍·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제13조(위탁운영)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회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군 소재 비영리법인·단체 등에 그 소재지별로 위탁운영 할 수 있다.